

영주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3 - 5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오수 발생량에 대한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오수발생량 및 단위단가 산정기준 마련(안 제19조제1항제1호, 별표4, 별표5)

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부합되도록 변경(안 제19조제1항제4호)

다.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별표 5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3월 06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환경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연락전화 : (054)639-7280

E-mail : baesm10@korea.kr, FAX : (054)639-7772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적용하여 산정한다”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가목 중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시”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별표 5의2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기준

(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최초오수 발생량(A) (m ³ /일)	1차 증축·용도변경 등				2차 증축·용도변경 등			
		오수 증가량(B)	총오수량 (A+B=C)	부과량 (D)	적용방법	오수 증가량(E)	총오수량 (C+E=F)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등	“0”으로 본다	10미만	10미만	미부과	B<10	10미만	10미만	미부과	F<10
						10미만	10이상	10초과량	B+E>10
						10이상		E부과	E>10
		10이상	10이상	B부과	B>10	10미만	10이상	미부과	E<10
						10이상		E부과	E>10
		신축 건축물 등	10미만 (미부과)	10미만	10미만	미부과	C<10	10미만	10미만
10미만	10이상							10초과량	F>10
10이상								E부과	E>10
10미만	10이상			10초과량	C>10	10미만	10이상	미부과	E<10
						10이상		E부과	E>10
						10미만		10이상	미부과
10이상	E부과		E<10						
10이상 (전체부과)	10미만		10이상	미부과	B<10	10미만	10이상	10초과량	B+E>10
						10이상		E부과	E>10
						10미만		10이상	미부과
	10이상		E부과	E>10					

주) 단계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 적용방법(적용 예)

구 분	최초오수 발생량(A) (m³/일)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기량 (B)	총오수량 (A+B=C)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기량 (E)	총오수량 (C+E=F)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량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량부과
		11	11	11	(B)>10 전체량부과	4	15	-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7	18	-	
						11	22	11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량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본다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량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량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으로 오수 증가량이 10m³ 미만인 경우 : **미 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m³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설치 행위로 오수 발생(증가)량이 10m³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부과오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고 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5.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전부 포함.
 6.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는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배출량과 건축물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부과.(산정 예 : 폐수 7m³, 오수 5m³ 발생 시 12m³ 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 관련)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 (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 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 이하인 경우, 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imes (1 + \beta)$$

- ▷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수질오염 부과계수(β) = $f(C)$

$$= f\left(\frac{\text{연계처리 폐수의 수질}}{\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right)$$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표준값 예시)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2]

원인자부담금의 사용기준

(제21조의2 관련)

구분	자본적 지출 성격의 공사 예시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경상적 지출 성격의 공사 예시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하수관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우수 분리벽 설치 등	하수도 준설토 처리,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물 처리, 하수암거 보수(수선)공사,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토 운반, 하수관로 보수(수선)공사 등
펌프장	펌프장 펌프 제작 구매 설치, 하수중계 펌프장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펌프장 조목스크린 제작 구매 설치, 펌프장 호이스트 교체 공사, 중계펌프장 배기 팬 증설 및 시설물 설치공사, 중계펌프장 운영 판넬 및 전기실 CCTV 설치공사, 펌프장 ALTS(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체공사, 펌프장 펌프기동반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중계펌프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공사 등	노후 유입펌프 수선공사, 우수 조정지펌프 수선공사, 초기우수처리 펌프 수선,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수리, 펌프장 수중사류펌프 2호기 수리,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회전자수리, 펌프장 집수정 침사물 준설공사 등
하수처리장	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 처리장 기존염색라인 펌프 교체설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송수관로 가압펌프 설치, 처리장 송풍기 교체설치, 하수처리장 2단계 송풍기 현장 제어반 구매 설치, 처리장 공장 초침 레이크 스크린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소화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처리장 슬러지 펌프 교체, 하수처리장 방류 펌프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탈수동, 소화 농축조 탈취설비 설치공사,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2단계 5계열 용존산소 계측기 교체, 하수처리장 2계열 생슬러지 유량계 교체, 처리장 TMS관제시스템 데이터로거 교체, 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 교체, 처리장 낙뢰방지 설비 공사 등	염색펌프장 펌프2호기 수리 공사, 유입펌프 및 냉각수펌프 정기수선, 유입침사지 소모성 부품 구매, 침사지 역사이편 권양기 수선, 하수처리장 침사 제거펌프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침사인양기 및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부품제작 설치, 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 처리장 초침 및 잉여슬러지 펌프 부품 제작 구매, 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송풍기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염소소독시설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슬러지 계근대 개선 공사, 하수처리장 수전실 메인고압 변압기(154kv) 수선, 하수처리장 송풍동외 무정전 축전지 구입, 수질계측 기기 소모품 및 수선비,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지붕층 방수도장 공사, 하수처리장 창호 교체 및 도장공사, 하수처리장 건축물 균열 및 누수 보수, 탈수기동 옥상방수면 크랙보수 등